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11. 2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11. 2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5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12. 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정광열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중동폐기물소각시설) 설치,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·간접영향권(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, 전문가 11인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어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6인과 시의원 2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. 선정요구인원 : 8인(주민 6인, 시의원 2인)

2. 자격요건(도면 : 별첨 1)

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미터 이내 거주자

3. 근거법규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선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첨부서류

○ 의견서 1부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

성명	생년월일	성별	주요경력	주소	연락처	비고
박노철	50. 6. 28	남	• 시의원	삼정동 316-7	673-2058	시의원
이제영	61. 3. 8	남	• 시의원	오정동 544-22	672-2157	시의원
이연리	55. 4. 10	여	• 푸른마을회장 • 지원협의체 전 위원장	삼정동 275-1	672-2146	시민
이성자	64. 10. 15	여	• 지원협의체 전 위원장	삼정동 283-15	672-0701	시민
서은길	49. 7. 3	여	"	삼정동 276-6	672-3975	시민
박궁자	44. 7. 1	여	"	삼정동 274-4	684-7086	시민
권명옥	68. 5. 3	여	주부	삼정동 287-32	681-4449	시민
황화자	44. 5. 4	여	"	삼정동 285-10	672-4296	시민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

의안번호	제238호
의결년월일	99. 12. 20 (제75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중동폐기물소각시설)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·간접영향권(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)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, 전문가 11인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어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6인파 시의원 2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1. 선정요구인원 : 8인(주민 6인, 시의원 2인)
2. 자격요건(도면 : 별첨 #1)
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자
3. 근거법규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

주민협의체 선정규정 및 임무

1. 주변현황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택 1,300세대 존치

2. 대표선정기준

- 선정인원 : 8인 (주민 6명, 시의원 2인)
- 임 기 :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

3. 구성방법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지경계선으로 300m 이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

4. 임 무

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

5. 폐기물소각시설주변지역 거주현황 : 별첨 # 1

6.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승낙서(안) : 별첨 # 2

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(안)

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(-)

주 소 :

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중동 폐기물소각시설) 주변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.

1 9 9 9 년 월 일

위 본인 (인)

부천시의회의회장 귀하

첨부 # 1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중동소각장) 주변 현황도

